

## ILO어선원노동협약과 어선법의 어선거주설비에 대한 고찰

김옥성·박문갑  
한국해양수산연수원

### 서론

우리나라의 어선어업에서 어선원 구인난은 조업 장애 요인의 하나가 되었으며, 양질의 어선원 확보가 경쟁력의 한 요소이다. 이러한 경쟁력의 중요한 요소의 하나인 양질의 어선원 확보를 위해서는 그들의 근로 환경과 근로 조건 등을 향상시켜 선상에서의 어선원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국제노동기구 (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ILO)에서는 2007년 6월 14일 제96차 국제노동기구 총회에서 167개국 정부대표와 노사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찬성 437표, 반대 2표 및 기권 22표로 「2007년 어선원노동협약 제188호 (Work in Fishing Convention, 2007)」을 채택하였다.

이 협약은 항만국통제 (Port State Control: PSC)와 관련하여 비차별 조항이 도입되어 있고, 발효 요건도 연안 8개국을 포함한 10개국의 협약 비준으로 되어 있어 동 협약이 발효되면 우리나라 어선어업, 특히 원양어업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으므로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한 실정이다.

본 연구는 양질의 어선원을 확보하고 나아가 우리나라 어선어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요구되는 어선의 거주환경 개선을 도모하기 위하여 ILO의 2007년 어선원 노동협약과 우리나라 어선법령의 어선 거주 설비를 비교 고찰하였다.

### 재료 및 방법

본 연구에서는 ILO의 2007년 어선원노동협약 “제5편 거주 구역 및 식량”의 내용과 우리나라 어선법령의 관련 조항을 비교하여 우리나라 어선 거주 설비의 협약 내용 충족 여부와 충족되지 않은 점에 대해서는 그 충족 방안을 제안하는 것으로 하였다.

먼저, 협약의 거주 설비의 내용을 적용받는 어선은 협약 발효 후의 신조 어선과 거주 구역을 개조하는, 생계형 어로에 종사하는 어선을 제외한 모든 어선이며 협약에 명시된 거주설비에 관련된 주요 내용은 1) 위생과 안전 보건 및 안락한 조건을 고려한 거주 구역과 주방공간의 유지, 2) 통풍, 냉·난방 및 조명, 3) 과도한 소음과 진동의 경감, 4) 침실, 식당 및 기타 거주 공간의 위치, 크기, 재질, 가구 및 비품, 5) 화장실 및 욕실을 포함한 위생설비와 냉·온수 공급 등이며 그 구체적인 명세는 부속서 III에 규정되어 있다.

본 협약 적용 범위는 어선의 길이를 기준으로 규정하였으나, 동서양 어선의 길이 대비 총톤수의 차이가 너무 커서 총톤수로 어선을 규율하는 법률을 가진 국가들의 협약 비준에 어려움이 예상되어 선박길이에 대한 국제총톤수 동등 규정을 두고 있으며, 그것은 Table 1과 같다.

Table 1. The equivalent measurement between international gross tonnage and length

총톤수 (G.T., ton)	국제협약상 선체의 길이 (L, m)	전장 (LOA, m)
75	15	16.5
300	24	26.5
950	45	50.0

우리나라 어선법 법령의 거주 설비의 주요 내용은 1) 선원실과 위생제실 및 거주제실의 위치, 크기, 재질, 가구 및 비품, 2) 진료실·병실 등의 설치, 3) 기타 설비의 설치 등이며 어선의 거주 설비 구역의 규격과 품질에 관한 법령에는 어선법, 어선설비기준 및 총톤수 10톤 미만 소형어선의 구조 및 설비 기준이 있다.

## 결과 및 고찰

2007년 어선원노동협약의 요건과 국내의 어선 설비 기준을 비교한 결과는 Table 2와 같다. 협약에서는 어선원의 근로가 다른 직업에 비해 위험이 높고 생활환경은 낮아 어선원의 양호한 근로 및 생활환경의 보장을 목적으로 어선의 생활환경의 편의, 안락, 위생, 개인 사생활 보호에 역점을 두고 있는 반면, 국내기준은 안전에 중점을 두고 있어 협약 요건에 대부분 미흡함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협약에서는 Table 2에 나타낸 것과 같이 동등 규정과 노사 협의에 의한 완화 기준을 두고 있어 이를 적절히 활용한다면 거주 환경 개선과 협약 요건을 동시에 충족시킬 수 있다.

Table 2. The comparison on accommodation facilities between National Act and Work in Fishing Convention 2007

거주설비항목	국내 어선 설비 기준	ILO 어선원노동협약
천정높이*	길이 45m 미만 : 1.8m 이상 길이 45m 이상 : 1.9m 이상	길이 24m 이상 : 2.0m 이상 (노사 협의 후 1.9m 가능)
거주구역격리	45m 미만 : 비적용	모든 어선 적용
단열	일부 적용 배수설비 부분 없음	모든 어선 적용
방충	없음	실행 가능한 한 조치 요구
비상탈출구	요구 기준 이상	모든 어선 적용

소음 진동	없음	모든 어선 적용, 특히 길이 24m 이상은 선박 소음 기준 요구
난방, 냉방	길이 60m 이상: 적용 그 외의 선박은 불명확	모든 어선 적용 길이 24m 이상 난방 장치 요구
조명설비	선원실 조명 등 기준 불명확	독서등, 비상조명, 탈출용 야간조명설치 길이 24m 이상 밝기 기준 요구
침실 바닥면적*	1. 800톤 미만 : 1.85m <sup>2</sup> 800~3,000톤 : 2.35m <sup>2</sup> 3,000톤 이상 : 2.78m <sup>2</sup> 2. 길이 24m 미만 : 0.55m <sup>2</sup> 길이 24m 이상 : 1.10m <sup>2</sup>	· 길이 24m 이상 45m 미만 : 1.5m <sup>2</sup> (노사 협의 후 1.0m <sup>2</sup> 가능) · 길이 45m 이상 : 2.0m <sup>2</sup> (노사 협의 후 1.5m <sup>2</sup> 가능)
침실 인원수*	기준 없음	· 길이 24m 미만 : 6명 이하 · 길이 24m 이상 : 4명 이하 - 사관실은 24m 이상 : 최대 2명 이하
침대치수*	190cm × 70cm 적당한 책상설치 기준 없음	길이 24m 이상 : 198cm × 80cm (노사협의 후 190cm × 70cm 가능) 책상설치 등 요구
식당*	침실 구역과 분리 냉·온 음료 제공설비 기준 없음	침실 구역과 분리 길이 24m 이상 : 냉·온 음료 제공 설비
위생설비*	· 길이 24m 이상 대변소 1개/30인 욕실, 샤워실, 세면기 규정 없음 · 길이 45m 이상 대변소, 욕실, 세면소 각 1개/18인 · 길이 60m 이상 대변소, 욕실, 세면소, 세탁장 각 1개/15인	· 길이 24m 이상 욕조, 화장실, 세면대 각 1개/4인 (욕조, 세면대: 노사 협의 후 매 6인마다 1개 가능) (화장실: 노사 협의 후 매 8인마다 1개 가능) 세탁·건조·다림질을 위한 적절한 시설 · 길이 45m 이상 욕조, 화장실, 세면대 각 1개/4인 세탁·건조·다림질을 위한 독립된 시설
병실*	최대 승선 인원 50인 이상	길이 45m 이상
오락시설	기준 없음	길이 24m 이상 선박에 제공
조리설비	조리실: : 길이 20m 이상 : 적용 식품저장고 : 길이 24m 이상 냉동저장고 : 7일 이상 조업 선박 액화석유가스설비 보관 장소	길이 24m 이상 : 분리된 조리실, 식품저장 고, 냉장고 시설 설치 조리용액화석유가스 보관 장소

\* 동등규정 적용 가능 항목

동등 규정을 적용할 경우에 국내 현존선과의 국제총톤수 비교를 위하여 사용한 선박검사기술폭회의 24m이상 소형어선의 국제협약상의 선체의 길이와 총톤수와의 관계는 다음과 같다.

(7908)2 . 8 7 2 6

여기서,  $GT$ 는 국제총톤수,  $L$ 은 어선의 국제협약상의 선체의 길이를 나타내고 있다.

이 관계식으로 협약에서 제시하는 길이를 기준으로 국내 현존선의 총톤수를 환산한 값은 Table 3과 같다.

Table 3. The comparison between equivalent tonnage on convention and calculated tonnage of existing fishing vessel

협약 기준단위	길이 24m	길이 45m
협약 동등기준 톤수(ton)	300	950
국적 현존선 환산톤수(ton)	74	449

어선법령에서 규정한 어선 거주 설비는 ILO어선원 노동협약 내용에 대부분 미흡하므로 협약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국내 어선법령을 개정할 방향은 다음과 같다.

- 1) 협약의 동등 규정을 적용할 경우에는 Table 3과 같이 국적 현존선의 선박의 길이를 국제 총톤수로 환산한 값과 제시하는 동등기준 총톤수와의 차이가 매우 크므로 어선원의 생활 환경 개선 등 근로 조건만을 고려한다면 총톤수에 의한 규정 적용을 배제해야 하나 우리나라 연근해 어업의 규모와 전통적 선형의 유지를 위해서는 동등 규정을 항목별로 적절히 적용하되 완화 규정도 고려하고 또한 노사 입장을 충분히 반영하여 국내법령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
- 2) 특히, 침실당 인원수와 위생설비 부분의 기준은 우리나라 기준이 매우 열악하여 대폭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
- 3) 한편, 문제점으로는 협약에서 요구하는 기준이 현행 국내 기준을 대부분 상회하고 있고, 선원실과 거주제실은 총톤수 측정에 포함되는 부분이므로 이에 따라 총톤수의 증가가 예상되나, 우리나라에서는 수산자원관리 및 보호를 위하여 법령으로 어선의 선복량을 제한하고 있어서 근본적으로 신조 또는 거주구역의 개조를 통한 어선원 거주 설비 개선이 어려운 점이 있다. 따라서 향후 어선의 어획 성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어선원 생활환경 개선을 위하여 협약의 기준을 수용할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총톤수 증가와 어선의 복원성 변화에 따른 선형의 개량에 대한 연구가 시급하다.

## 참고문헌

- 정대율·박문갑, 2007. 2007년 어선원노동협약 및 권고, 다솜출판사, 37-89.  
 선박검사기술협회, 2006. 소형어선 및 화물선의 복원성기준 연구, 해양수산부, 93-132